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29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 : 임이자 · 안상훈 · 유용원

조정훈・김위상・조지연

김장겸 · 김용태 · 우재준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대규모의 인명피해 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1개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산불 진화에 전문적 기술을 갖춘 특수진화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전문 산불 진화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진화교육 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 성·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산불 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 및 제37조 제2항). 법률 제 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이하 "공원사무소의 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공원사무소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2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		
<u>원사무소의 장</u> 은 산불경보가	원사무소의 장(이하 "공원사무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의 장"이라 한다)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		
영) ① (생 략)	영) ① (현행과 같음)		
② <u>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u> 은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불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	<u> 공원사무소의 장</u>		
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			
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